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876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3. 11. 6.

주 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1월 6일

위원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중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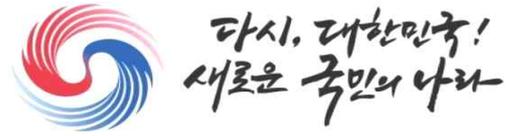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 별지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2023. 11.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제도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7
① 정책융자금 심사기준 제각각	7
② 정책융자금 지원 관리 미흡	12
③ 목적 외 사용과 불법행위 만연	15
IV. 개선방안	21
① 정책융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등 심사기준 강화	21
② 실효적 사후관리·감독 강화	23
③ 부정사용기업 제재근거 마련	24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5

I. 추진배경

-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예산낭비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과제 선정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 방식으로 지원 중
- 그러나,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불합리하여 일부 기업에 정책 융자금이 편중 지원되거나 부적격기업이 선정되기도 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목적 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 빈발

- ▶ 일부 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고, 보유자금은 예금으로 고금리 이자 수익을 얻는 등 이차보전 제도를 악용해 "이자놀이" (22.11월, 언론기사)
- ▶ 28억여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계설비 제작업체와 짜고 중고 설비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정책자금 중 15억여원을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정책자금 횡령 (21.8월, 언론기사)
- ▶ 정책자금 쪼개기 대출 꿈수 있는데, 점검 실적은 3% "감독 소홀"
A기업은 점검기준 금액 이하로 4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대출받고 마지막 대출 2개월 후 폐업, 회수금액은 총 6억원 중 25백만원에 불과 (21.10월, 언론기사)

⇒ 이에,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정책융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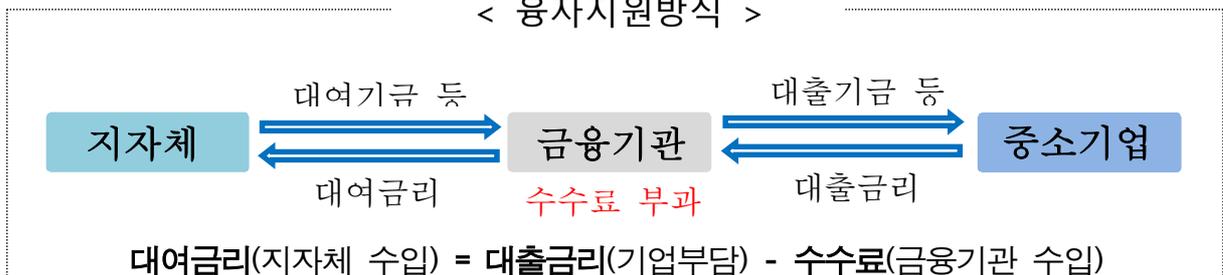
-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원현황 실태조사 : ~ '23. 8월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 협의 : ~ '23. 9월
- 위원회 상정·권고, 보도자료 배포 : ~ '23. 11월

II. 제도현황

1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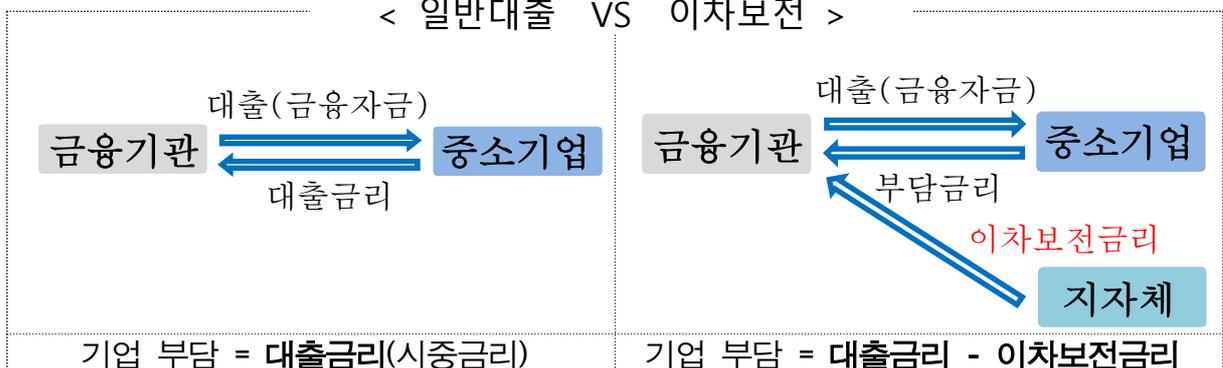
- (관련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중소기업법)」 제3조, 지자체별 조례·지침
-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자금을 지칭하며, 출연금·차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예산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확보한 자원
- (지원방식)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원은 2가지 방식을 사용 중
 - (융자지원) 지자체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자체 조성한 기금, 예산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

< 융자지원방식 >



- (이자보전) 금융기관이 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면, 지자체가 이자 차액(이자보전금)을 금융기관에 보전

< 일반대출 VS 이차보전 >



※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고 대출상환 조건이 유리하여, 기업들이 필요자금원으로 은행 직접 대출(58.4%)에 이어 많이 이용(30.5%)
(2021년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2 중소기업 고충민원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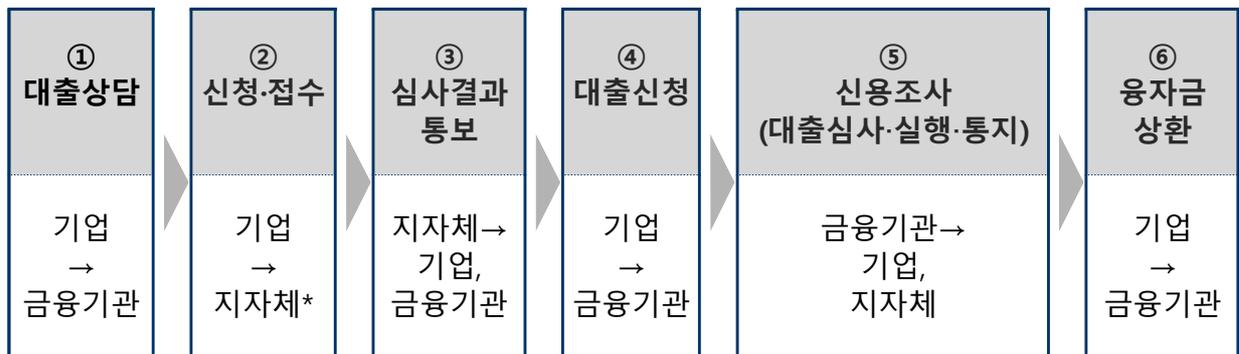
○ 최근 5개년 연도별 국민신문고 접수 중소기업 민원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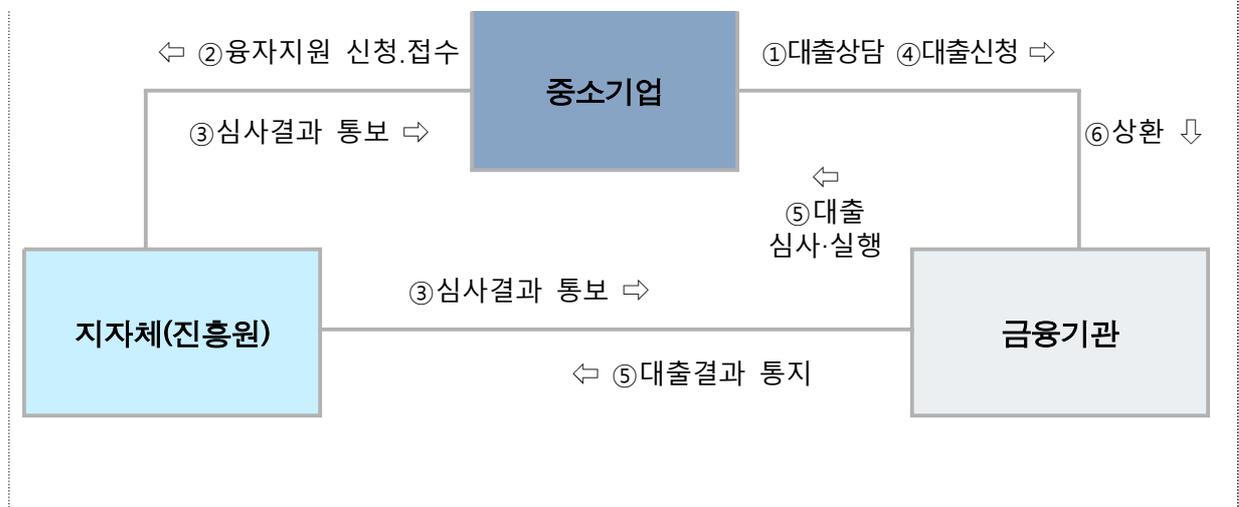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9월 현재)	계
민원	114,847	41,470	18,010	14,546	9,978	198,851
제안	504	566	405	800	663	2,938
계	115,351	42,036	18,415	15,346	10,641	201,789

3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원 절차

○ 흐름도



* 지자체는 산하기관(진흥원)을 통해 실무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조성 및 지원 현황

○ 연간 실제 운용 규모

(2023년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자금	은행 자금	소계
서울	2,000	14,000	16,000
부산	115	14,800	14,915
대구	550(일반회계)	10,000	10,550
인천	350	11,600	11,950
광주	355	2,540	2,895
대전	600	3,500	4,100
울산	-	1,450	1,450
세종	-	550	550
경기	600	19,400	20,000
강원	250	3,250	3,500
충북	500	3,450	3,950
충남	-	6,850	6,850
전북	-	2,437	2,437
전남	700	2,700	3,400
경북	1,000	6,000	7,000
경남	-	11,000	11,000
제주	-	7,370(5년평균)	7,370
총계	7,020	120,897	127,917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2022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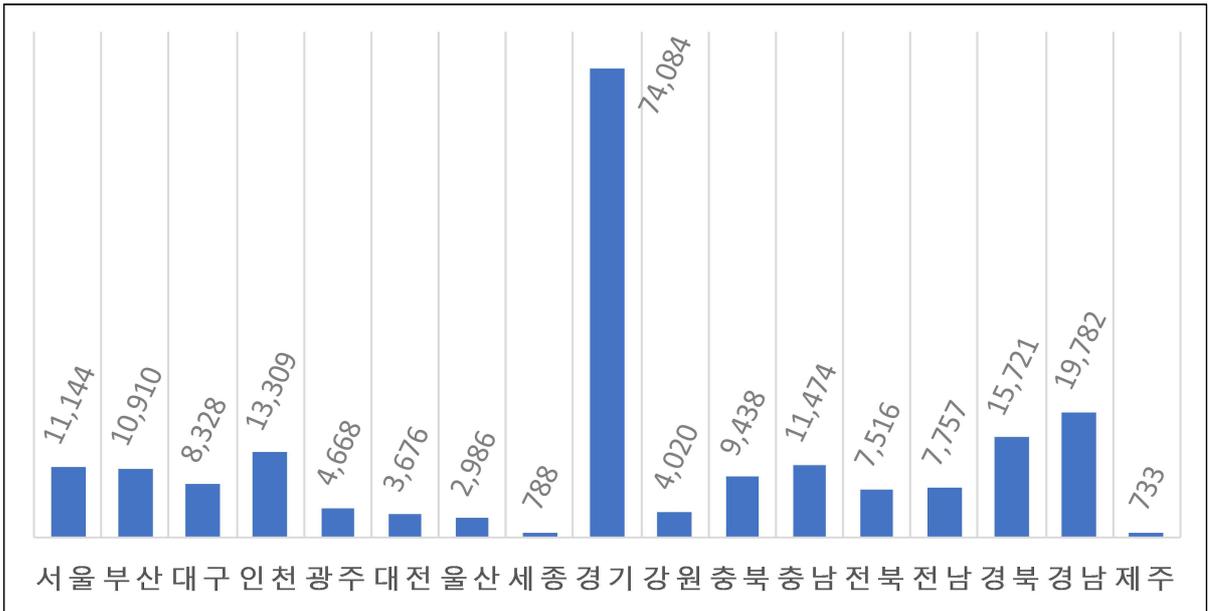
지자체	기금(광역자치단체)	지자체	기금(광역자치단체)
서울	6,075	경기	9,715
부산	1,451	강원	901
대구	-	충북	894
인천	2,387	충남	1,167
광주	1,838	전북	2,071
대전	1,146	전남	3,243
울산	605	경북	3,167
세종	48	경남	-
제주	1,200	총계	35,908

○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원한도·상환기간(2023년)

구분	지원한도			상환기간		
	시설자금	운전자금	비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비고
서울	50억	5억원	200억 (산업센터 건립)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부산	15억	8억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대구	20억	5억		3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약정 상환	
인천	35억	10억	100억원 (우대기업)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광주	10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대전	15억	5억	50억 (산업센터 건립)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울산	-	4억		-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세종	20억	4억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경기	30억	5억	300억 (산업센터 건립)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강원	15억	16억	30억 (특수목적)	4년 거치 5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	
충북	10억원	5억원	일부 시·군만 중복지원 제한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충남	20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전북	10억	3억	13억 (지역산업)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전남	18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경북	13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약정 상환	
경남	30억	10억	50억(원자력)	4년 거치 6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기간별 차등지원
제주	20억	5억	90억(이전기업)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업종,규모별 차등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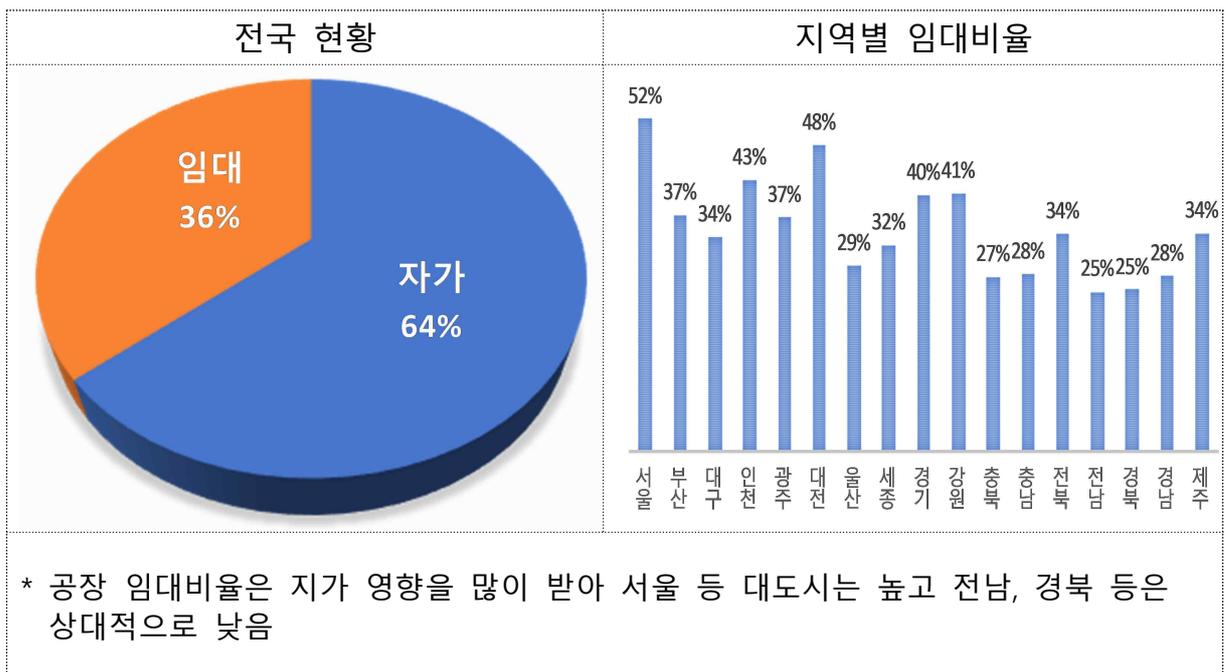
5 중소기업 공장 등록·보유 현황

○ 지역별 공장등록 현황('23년 3월 기준 : 206,334개)



(출처 :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 자료 재구성)

○ 공장보유현황('23년 3월 기준)



(출처 :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자료 재구성)

Ⅲ. 문제점

1 정책융자금 심사기준 제각각

□ 중복지원 허용으로 정책자금 편중 배분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중소·벤처기업 대상 융자금 지원 시 중복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 기업 위주로 자금 독식 우려
-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추가 지원하거나 중복지원을 명시적으로 장려하여 일부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 취지에 반한 무분별 집행사례 만연

[광역·기초지자체에 동시 지원하여 광역은 탈락, 기초는 선정]

- ▽▽시 소재 A기업은 '21년도 □□도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을 받기 위해 지원했으나, '신청금액(500백만원)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배제'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21.12.07. 최종 탈락
- 한편, A기업은 같은 시기 중복지원 제한기준이 없는 ▽▽시 시행 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였고 이 지역에서는 융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서 '21.12.09. 5억 원을 대출받음

[명시적 중복지원 허용]

- ○○도는 관내 기초지자체의 중복지원 제한 여부를 규정하지 않은 반면, 관내 기초지자체인 △△시는 '○○도 지원 융자금 지원과는 중복제한 없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
- 이에, A기업은 2022년에만 ○○도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융자받음

*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중복지원 제한 규정이 없고, 기초지자체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오히려 허용

[동일 지자체 내 중복지원 규정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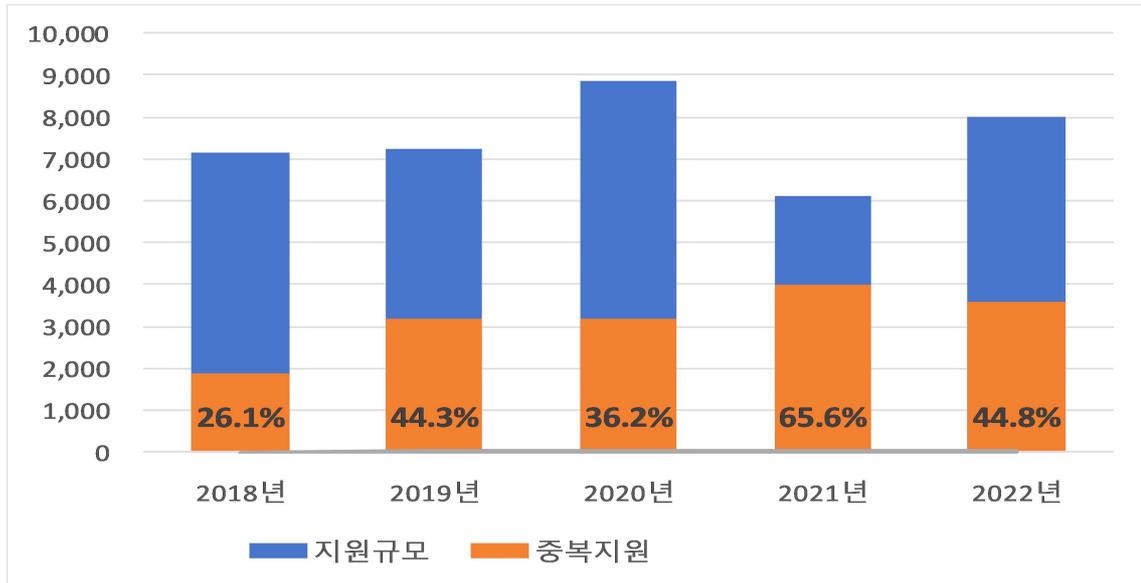
- ▽▽시는 중소기업 융자지원계획에 '융자금 전액 상환완료 후 1년 내 신청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음에도, A기업을 위해 2018년부터 지원하던 기간 내(100백만원, 5년)인 2020년에 추가 지원(130백만원, 5년)

('23. 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물론,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업까지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자금 유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불편·불만 야기

< 최근 5개년 △△시 지원대상기업 중 ○○도와의 중복지원 현황 >

* 금액 기준



(단위 : 금액-백만원, 기업-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기업								
지원규모	7,149	28	7,230	28	8,850	31	6,100	17	8,030	25
중복지원	1,864	5	3,200	9	3,200	10	4,000	10	3,600	10
비율	26.1%	17.9%	44.3%	32.1%	36.2%	32.3%	65.6%	58.8%	44.8%	40.0%

○ 또한, 융자금 지원한도* 규정도 부재하여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혜택이 편중되는 경향 발생

- 실제로, 광역지자체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탈락한 일부 기업이 지원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같은 지자체 내에서 매년 일정액을 계속 대출받는 사례도 빈발

* 지원한도(예시) : 수혜 횟수, 지원 상한금액

[광역시자체 탈락 후 지원한도 없는 기초지자체로부터 혜택]

- △△시 소재 A기업은 '신청금액(300백만원) 포함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지원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은 지원 배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2.02.22. ○○도 용자금 지원심사에서 최종 탈락
- 반면, A기업은 지원한도 없이 시행 중인 '22년도 △△시로부터는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22.05.04. 5억 원을 대출받음

(‘2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당해 연도한도액만 규정하여 특정기업 혜택 쏠림]

- ▽▽시는 관내 중소기업 용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년 용자실행 가능하게 운영
- 이에, B기업은 '18~'20년, '22년 등 4년에 걸쳐 매년 각각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의 용자를 실행(2년거치 3년상환, 합계 20억 원)했고 특히, '19년에는 운영자금 외 시설자금 명목으로 2.85억 원을 별도 용자(3년거치 5년상환)받아 총5개 지원사업의 혜택을 유지

(‘2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편중지원 방지 위한 '지원한도' 규정이 있고, 일부 기초지자체도 수혜 횟수 제한이나 이력별 차등 지원 중

< (중앙행정기관 지원제한 예시) 2023 중소벤처기업부 >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 제외

< (광역시자체 지원제한 예시) 2023 경기도 지원계획 >

- 지원 제외기업(주요사유)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 (기초지자체 지원제한 예시) 2023 고양시 >

- 이자보전금리 차등지원 (1회차 2.5%, 2회차 2.0%, 3회차 1.5%)

- 나아가,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 중인 타 기금(Ex.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아 일부 기업은 유사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사례도 발생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지자체 내 기금 중복지원]

- ○○군 소재 A기업과 □□시 소재 B기업은 운전자금 명목으로 △△도로부터 A기업은 '18.05.30.부터 '20.05.30.까지, B기업은 '20.11.25.부터 '22.11.25.까지 각각 **'농어촌진흥기금' 200백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그럼에도, 이들 기업은 동일사업 내용으로 해당 기간 중 △△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A기업은 '19.08.05. **410백만원을**, B기업은 '21.04.09. **500백만원을** 각각 추가 융자받음

(‘2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선착순 자금배정 등 부실 심사

-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기업은 많은 상황에서,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먼저 신청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형식적 심사 관행화
- 행정편의주의적 선착순 선정으로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시켜 지원하는 기업도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경쟁·불편 유발

[단순 선착순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甲은 선착순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시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을 받기 위해 접수 첫날 오전 9시에 시청을 방문하여 순번 82번을 받음.
- 1번으로 오신 분은 전날 12시에 도착했다 하고, 일부 기업은 알바생을 고용해 밤새도록 대기시켜 자금을 신청한다는 전언.
- 순번이 늦은 관계로 자금 소진 시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기업 운영을 위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본인 순번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시간낭비 초래.

(‘23. 3월, 권익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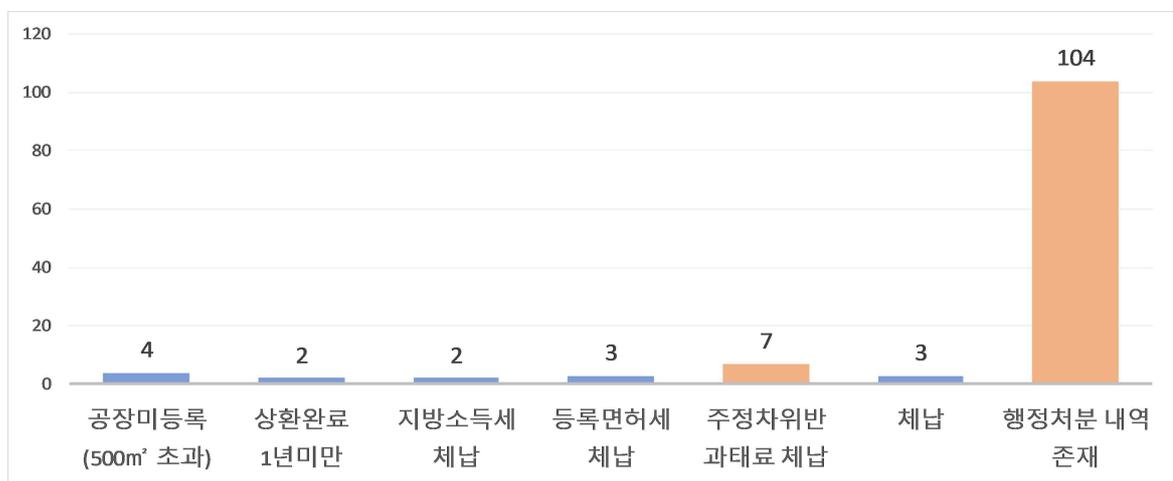
□ 직접 연관성 부족한 사유로 자금지원 제한

- 사업내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소액의 과태료 체납 이력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하는 사례 발생

< 지원 제외 대상 사유(예시) >

- ▶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시 부적격 사유 실태('18~'22년) >



('23.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실제로, 소속직원의 주정차 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금지원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은 과도하다는 민원도 제기

[직원 과실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원인으로 기업 지원 제한]

- 2022년 ○○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A기업은 2021년 회사 법인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투기하여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참여를 제한받음

(’23. 3월, 국민신문고)

※ 한편, 국가사업은 세금 체납 시에만 지원을 배제하고, 지원자가 신청단계에서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

2 정책융자금 지원 관리 미흡

□ 융자금 지원과정에서의 관리·점검 소홀

- 융자금 조성 주체는 지자체임에도 금융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사용 실적 관리·점검은 소홀한 경향이 많고, 휴·폐업으로 인한 미운영 기업에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이를 모르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속출

- A시는 지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에 자금 지원을 승인함

(’21. 5월, 감사원 감사)

※ 휴폐업 또는 공장등록 현황 정보는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파악 가능하나,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조회조차 누락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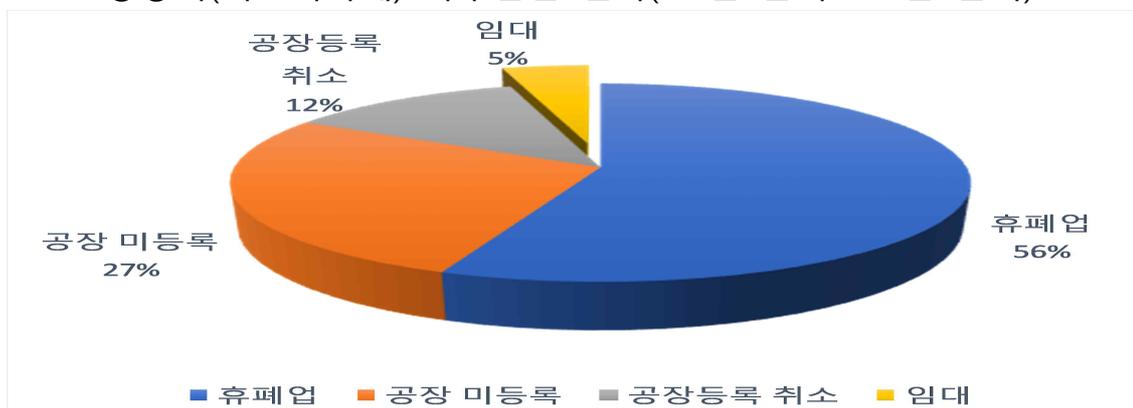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신규등록, 휴·폐업 등)을 처리완료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
00000000000000000000	폐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 2022-09-30) 입니다.	2023-07-21

< ○○시(기초지자체) 사후점검 결과(’21년1분기~’22년3분기) >



(’2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용자실행 후 현장점검 이력이 불명확하고 사업완료(실적) 보고서 제출*도 미비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도 곤란

* 제출의무가 없는 지역이 많고, 미제출 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임의 환수방식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낮음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예시) >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사업완료 보고) ①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3조(용자승인 결정 취소) ① 도지사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3. 휴·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 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5.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광역자치단체 사업완료 보고 규정 현황 >

지자체	보고서 제출의무	제재규정		지자체	보고서 제출의무	제재규정	
		사업참여제한	자금회수			사업참여제한	자금회수
서울	○	-	-	경기	○	제출시	-
부산	-	-	-	강원	○	-	○
대구	○	1년	-	충북	-	-	-
인천	○	-	-	충남	-	-	-
광주	-	-	-	전북	○	-	○
대전	-	-	-	전남	○	-	○
울산	○	-	○	경북	○	-	○
세종	○	-	○	경남	○	-	○
제주	○	-	○				

- A광역도는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후관리 현장점검도 일부 기업만 선별 시행하면서, 임의로 공장을 임대하는 목적외 사용 사례 발생
- B광역시는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이행촉구하고 미이행 시 용자금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실제 환수 조치 사례는 전혀 없음

(2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우대금리 조건 상실 후 금리 혜택 유지

- 여성·장애인기업에 금리를 우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후관리도 부실
- 대표이사를 여성으로 기재하여 추가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후, 지원 과정에서 조건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 유지

[우대금리 조건 상실했음에도 혜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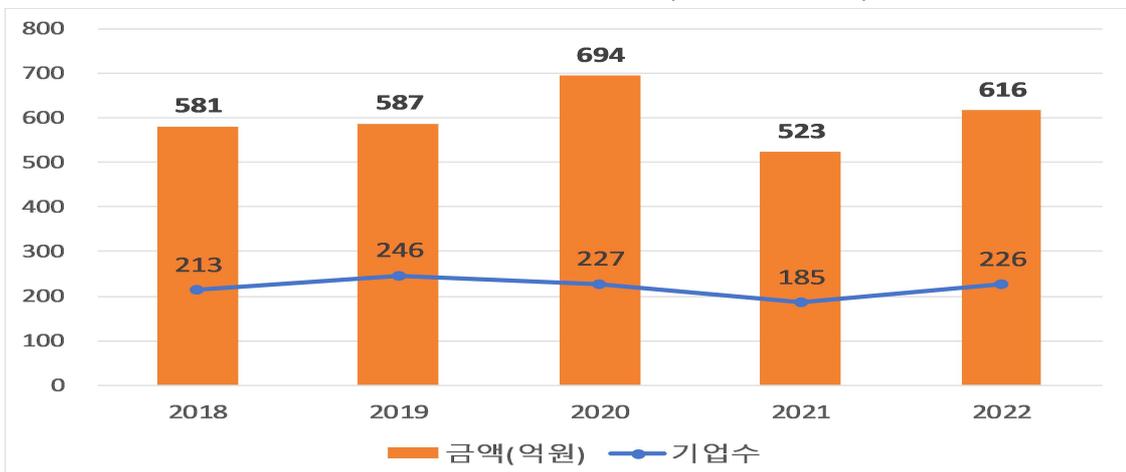
- 2015년 ○○도는 A기업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15. 11월부터 '23. 11월까지 이차보전금리 0.3%의 추가 지원조건으로 총10억 원의 자금을 융자지원받음
- 이후, A기업은 '18.10.17. 대표이사를 남성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간과하여 현재까지 추가금리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2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출 미실행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 지원대상기업이 융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자금흐름이 방해받는 사례가 빈발함에도, 대출 미실행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당장 지출계획이 없는 기업도 경쟁적으로 자금을 신청·선점하고 있어, 정작 즉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배제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는 기현상 발생

< ○○도 대출 미실행 현황('18년~'22년) >



(’2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3

목적 외 사용과 불법행위 만연

□ 특수관계인 간 거래 행위로 사실상 우회 증여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규정이 없어 시설자금과 건축비가 공장·부지 매입 등 본래 목적이 아닌 사실상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제한할 필요

[자녀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부모 회사의 공장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입]

- 甲이 대표이사인 A기업은 부친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B기업의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15. 11. 4. ○○도로부터 용자금 1,000백만원을 지원받음

* A기업은 甲과 남동생이 같은해 9월말부터 각 50% 보유 중이고, 해당 기업의 주된 매출·매입처는 부친이 운영하는 B기업으로 확인



*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부모자식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 (입증책임은 정상 매매임을 주장하는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

(‘23.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

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1.~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登記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정책융자금을 더 받기 위한 조기상환 약용

- 현행 제도는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조기상환 후 일정 기한까지 추가 지원을 금지하여,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 중
- 그러나, 일부 기업은 정책융자금을 조기상환 후 채용자를 통해 지원 받는 이차보전금의 총액 규모를 늘리는 사각지대 발생

[조기상환방식을 활용하여 지원받는 자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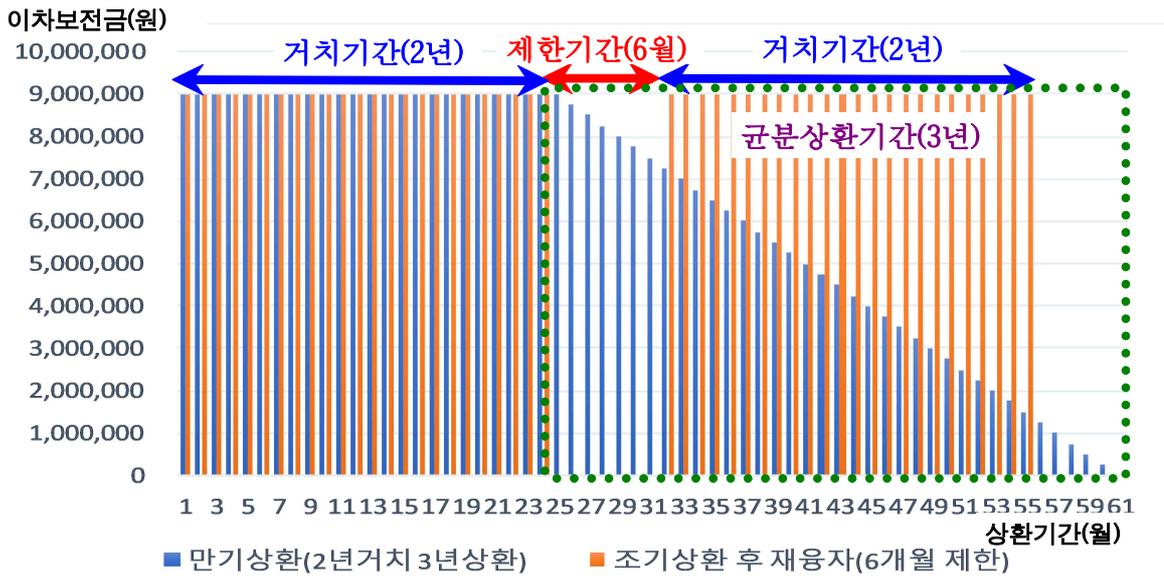
- ○○시는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조기상환 후 6개월 내인 기업은 지원 제외
- 이에, A기업은 '19. 3월 지원한도액(5억원)의 융자를 실행(2년거치 3년상환 조건)하여 ○○시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다가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21. 11월 융자금 전액을 조기 상환한 후 '22. 7월 5억원의 채용자를 실행

(’2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만기상환이 아닌 조기상환 시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맹점을 이용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채용자 신청을 조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융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도 저해

< 상환 방식별 이차보전금 추이 비교분석(예시) >

<조건> 융자금 36억 원, 이차보전율 3%, 2년거치 3년상환, 조기상환 시 6개월 지원 제외



구 분	만기상환	조기상환 후 채용자	차액
이차보전금	38,250만원	43,200만원	4,950만원

□ 지원시설물을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으로 악용

- 일부 기업은 지원자금을 본래 목적인 생산설비 마련 등에 사용하지 않고 매매나 임대사업 등 부동산 투기 목적에 유용한 의혹
- 지원받은 용자금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매입건물(공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매매·임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 실투자금 감소, 임대수익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저금리 용자금을 신청한 의혹

< 목적외 사용(매입공장 전부임대) 현황 >



위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은 ○○도로부터 2021년도 용자금 지원기업에 선정된 후, 공장매입 명목으로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의 2,980백만원을 지원받음 ■ 그러나, A기업은 부동산 매입 후, '22. 04. 11. B기업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13,000만원, 월세 1,300만원)을 체결 <p>* 대지면적 3,315㎡, 건축(A+B) 면적 2,444㎡</p>
소요자금	4,100백만원 (공장 구입비)
지원금	2,980백만원
자부담금	1,120백만원 (소요자금 - 지원금)
보증금	130백만원
실투자금	990백만원 (자부담금 - 보증금)
年이익 (월세*12월)	156백만원 (13백만원/월 × 12월)

< 목적외 사용(신축공장 일부임대) 현황 >



위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은 ○○도로부터 2018년 용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신축 명목으로 1,908백만원을 지원받아 건축·사용승인 득함('19.01.22.) ■ 이후, '19.03.26. B기업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21,500만원, 월세 2,150만원)을 '19.06.05. C기업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7,000만원, 월세 700만원)을 각각 체결 <p>* 신축공장(ㄱ+ㄴ+ㄷ) 연면적 4,939㎡, 임대공장(ㄱ+ㄴ+ㄷ 중 일부) 면적 4,523㎡(임대비율 92%)</p>
소요자금	2,386백만원 (공장 신축공사비)
지원금	1,908백만원
자부담금	478백만원 (소요자금 - 지원금)
보증금	285백만원
실투자금	193백만원 (자부담금 - 보증금)
年이익 (월세*12월)	342백만원 (2,850만원/월 × 12월)

< 목적외 사용(신축공장 일부임대) 현황 >



위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업은 2021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공장신축 명목으로 1,400백만원을 지원받아 건축 후, '21.07.20. 건물 일부에 대해 B기업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4,500만원, 월세 450만원) 체결 <p>* 신축공장(ㄱ+ㄴ+ㄷ) 연면적 2,496㎡, 임대공장(ㄴ+ㄷ 일부) 면적 826㎡(임대비율 33%)</p>
소요자금	1,750백만원 (공장 신축공사비)
지원금	1,400백만원
자부담금	350백만원 (소요자금 - 지원금)
보증금	45백만원
실투자금	305백만원 (자부담금 - 보증금)
년이익 (월세*12월)	54백만원 (450만원/월 × 12월)

< 목적외 사용(매입공장 매도) 현황 >

위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업은 2018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00백만원을 지원받아 '18.06.21. △△산업센터내 2개 호실(615, 616호)을 취득 후 '21.12.28. B에게 1개 호실(616호)을 매도하여 322백만원의 매매차익 실현 			
거래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A호	B호	계
	소요자금(매입금액)	883	598	1,481
	지원금	596	404	1,000
	자부담금(소요자금 - 지원금)	287	194	481
	매도금액		920	
	매매 차익(매도금액- 소요자금)		322	
수익률(차익/자부담금 *100%)		166%		

< 목적외 사용(신축공장 전부 카페 임대) 현황 >

 	
위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업은 ○○도로부터 용자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공장신축 명목으로 1,000백만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득함('21.08.04.) 그 후, 乙과 계약기간 20년에 이르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임차인(乙)이 '21.09.01.부터 카페로 운영 <p>* 임대료는 매출의 20%(최소 월750만원 보장), 기간 20년</p>
소요자금	1,334백만원 (공장 신축공사비)
지원금	1,000백만원
자부담금	334백만원 (소요자금 - 지원금)
연이익 (월세*12월)	매출액의 20% (금액 확인불가) 최소 90백만원 (보장금액 750만원/월 × 12월)

□ 부정사용 시 제재규정 부재

- 목적 외 사용 시 환수규정이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거의 없고 제재조치도 없거나 경미하여 부정사용 빈발

< 광역지자체 목적 외 사용 시 제재규정 현황 >

지자체	이차보전 중단 또는 자금회수	지원제한기간	지자체	이차보전 중단 또는 자금회수	지원제한기간
서울	○	-	경기	○	1년
부산	○	-	강원	○	3년
대구	○	-	충북	○	-
인천	○	-	충남	○	-
광주	○	-	전북	○	-
대전	○	-	전남	○	-
울산	○	-	경북	○	3년
세종	○	-	경남	○	3년
제주	○	-			

V. 개선방안

1 정책융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등 심사기준 강화

□ 중복지원의 제한과 지원한도 설정

- 융자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위주의 혜택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지원한도 설정을 내부규정·지침에 명시

< 개정사항(예시) >

필요 반영 항목	개선(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업에 대한 겹치기식 중복지원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경영안전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동일 지자체 내 유사사업 간 중복지원 제한 • 신청일 현재 A지자체의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수혜 중인 업체 ⇨ 광역기초지자체 간 중복지원 제한 • 해당 지자체가 운용하는 타 기금(예시 :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업체 (다만,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동일 지자체 내 타 기금 지급 시 중복지원 제한 • 자금지원 만료 후 1년 이내 기업 ⇨ 조기 상환 직후 재융자 실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상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쫄림검증’에서 대상 확인> ⇨ 상급기관 지원 포함 일정 금액 이상 지원 제한 ■ 최근 ○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사업 추가 지원 등은 자금운용 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 결정
 - 단순 중복이 아닌 신규투자, 경쟁력 있는 사업 등(사업목적 구체화 및 정산 철저)

□ 공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심사기준 명문화

-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사업목적을 고려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과 세외수입 체납을 이유로 하는 과잉금지(지원 배제) 제한*

*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시, 무조건적인 배제보다는 용자금 지원기업이 체납사실 인지하고 일정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인지·납부 기회 부여

< 개정사항(예시) >

현행	개선(예시)						
<p>■ 지원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시)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군) 	<p>■ 지원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이내 □월 이상의 영업·업무정지, △△△만원 이상의 과태료·벌금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기업 ⇨ 처분 경중을 고려한 제한기준 적용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동일한 목적 지원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자금지원 제한 - ○○법령 ○○조항 위반 기업 - 주요조건의 미충족, 대출 미실행 등 부적정 운영사실 확인 시, 일정 기간 지원 제한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재신청 기업은 6개월 이내 지원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시</td> <td>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 (3회 신청 제한)</td> </tr> <tr> <td></td> <td>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지원 제외</td> </tr> </table> </div>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재신청 기업은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예시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 (3회 신청 제한)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지원 제외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재신청 기업은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예시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 (3회 신청 제한)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지원 제외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침」 내지 「계획서」에 반영

정책제안

■ 단순 선착순 선정방식 지양

신청자가 많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사업은 일정 접수기간 부여, 심사기준 적용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필요

(예시) 자금 유형별 평가항목에 따라 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등

(단위 : 억원)

자 금 명	지원 규모	접수시기 및 규모			비고
		1차(3.1.~3.15.)	2차(6.1.~6.15.)	3차(10.1.~10.15.)	
계	1,000				
경 영 안 정 자 금	900	300	300	300	고득점자 우선
특별경영안정자금	100	1. 16. ~ 소진시까지			

2 실효적 사후관리·감독 강화

- 사업별 점검 주기·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카드(날짜, 점검내용, 현장사진 포함) 형태로 작성·보관하도록 내부기준 마련

[예시]

지방자치단체는 상환완료시까지 해당 기업의 사업장이 사업의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이를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대상기업 선정 당시 인정요건 유지 여부 등 주요 이행현황 점검*

* 이행현황 주요 점검사항 예시 : ①심사기준이나 지원 당시 조건 유지 여부 (Ex. 우대금리 지원받은 후 여성기업 조건 임의 변경, 중복수령, 상한 기준 위반, 대출 미실행 확인), ②자격 상실 여부(휴·폐업 현황, 타 시·도로 이전), ③목적 외 용도로 사용 (타 용도로의 임의 사용, 임차·매각으로 수익 실현), ④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여부

- 융자금 사용내역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업별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일정 기간 재신청(지원) 제한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침」 내지 「계획서」에 반영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시 환수·참여 제한

○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 사용*한 사실 적발 시 융자금 조기 환수·지원 제한

- 제재기준과 처분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사용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주요 부정 사용(목적 외 사용) 사유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대표자 내지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③ 기타 부당 사용(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또는 반대로 임의 변경 등)

예시	강원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경북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지원 제외

* 예산 사정·비위 유형·경중을 고려, 부정사용 기업은 일정기간(차년도, 2~5년 등 기간 명시) 지원을 배제하되, 세부기준은 기관별 자율 결정(예외사항 포함)

(Ex) 예외 인정사유(예시)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처분사항의 일정 범위 내 감경
- 해당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정상적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사전승인 얻은 경우 유예

□ 적절한 자금 사용을 위한 제도안내 강화

○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제재기준 등 주요 안내 문구*를 신청 서식에 명기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유도

* (예시) 목적 외 사용금지·제재기준, 조기상환 시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침」 내지 「계획서」에 반영

V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① 정책융자금의 중복 지원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	○ 중복지원의 제한과 지원한도 설정	광역지자체
	○ 공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심사기준 명문화	
② 실효적 사후관리·감독 강화	○ 사업별 점검 주기·방법 설정과 관리카드 작성·보관	광역지자체
	○ 지원대상 선정 당시 인정요건 유지 여부 등 주요 이행현황 점검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미제출 시 일정 기간 재신청·지원 제한	
③ 부정사용기업 제재 근거 마련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시 환수·참여 제한	광역지자체
	○ 적정한 자금 사용을 위한 제도안내 강화	

□ 조치기한 : 2024. 5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7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되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0. 14.] [강원도조례 제4933호, 2022. 10. 14., 일부개정]

강원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6.12.30.,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18., 2002.1.5., 2007.5.4., 2015.12.31., 2016.12.30.>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강원도에 소재 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1호부터 동조동항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10.29.>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점포를 말한다.
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10.29.>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3.14., 2007. 5.4.>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30.><개정 2021.10.29.>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5.4., 2007.7.6., 2015.12.31.>

1. 강원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용자와 금융기관의 협조용자에 적용한다.

② 조례와 규칙 및 자금운용계획과 위·수탁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③ 조례와 규칙, 자금운용계획, 위·수탁 협의서,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융자지원 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강원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매년 수립하는 융자계획의 지원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지점(공장)을 두고자 하는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제출 기업에 한함)으로 매년 수립하는 융자계획의 지원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다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이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수리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 건축비, 공장 매입비, 공장 임차비에 한하여 지원가능

4.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5.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가 매년 수립하는 사업별 세부지원계획에 의한다.

(이하 생략)